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0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2.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1
다. 관계 기관 의견	14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6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기준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3조·제5조의2·제10조 및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3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2026년에 40만원이 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30% 초과 5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2027년에 40만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u>100분의 40</u>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u>30만원으로 한다.</u>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특례) ① ----- ----- <u>일정 비율</u> ----- ----- <u>다음 각</u> <u>호의 구분에 따른다.</u>
<u><신 설></u>	<u>1.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대한 2026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u>
<u><신 설></u>	<u>2.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대한 2027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여져야 함.¹⁾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과 340만 8천원이고,²⁾

-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소득·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³⁾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3)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4년 현재 334,810원⁴⁾)을 상한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데,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짐.⁵⁾

-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었
고,⁶⁾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
십원으로 한다.
- 5)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
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
월까지로 한다.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
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
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
급여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
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액
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
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가. 소득재분배급여액
- 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

2018년 기준연금액과 2021년 기준연금액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이 되도록 일시에 인상하였는데,⁷⁾

- 2021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소득하위 2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19년에 먼저 30만원으로 인상하고,⁸⁾ 이어 소득하위 4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⁹⁾

□ 개정안은 소득하위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우선 2026년에 40만원으로 하고, 이어 소득하위 50% 이하인 사람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7년에 40만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관계없이 저소득 노인에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통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에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한 후 2030년경 1,298만명에 육박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도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7)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8) 법률 제16241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9)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85%)을 전제로 2024년 현재 334,810원인 기준연금액이 40만원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2034년)보다 7~8년가량을 앞당겨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일시 인상하게 되었을 때 늘어날 재정소요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2,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현행(A)	29.0	30.7	32.7	34.4	36.4	163.2	32.6
개정안(B)	30.0	33.0	35.2	37.0	39.2	174.4	34.9
소득 하위 30% 이하	15.1	16.1	17.1	18.0	19.1	-	-
소득 하위 30% 초과 50% 이하	15.1	16.1	17.1	18.0	19.1	-	-
소득 하위 50% 초과 70% 이하	8.1	9.6	10.3	10.8	11.4	-	-
추가재정소요 (B-A)	1.1	2.2	2.4	2.6	2.8	11.1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 2022~2072년 >

(단위: 만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14세 이하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15세 이상 64세 이하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65세 이상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계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자료: 통계청

< 소비자물가상승률별 기준연금액 추이 >

(단위: 원)

구분	소비자물가상승률(예상)					
	1.85% (최근 10년간 평균)	2%	2.42% (최근 5년간 평균)	3%	4%	5%
2024	334,810	334,810	334,810	334,810	334,810	334,810
2025	341,000	341,500	342,910	344,850	348,200	351,550
2026	347,300	348,330	351,200	355,190	362,120	369,120
2027	353,720	355,290	359,690	365,840	376,600	387,570
2028	360,260	362,390	368,390	376,810	391,660	406,940
2029	366,920	369,630	377,300	388,110	407,320	427,280
2030	373,700	377,020	386,430	399,750	423,610	448,640
2031	380,610	384,560	395,780	411,740	440,550	471,070
2032	387,650	392,250	405,350	424,090	458,170	494,620
2033	394,820	400,090	415,150	436,810	476,490	519,350
2034	402,120	408,090	425,190	449,910	495,540	545,310
2035	409,550	416,250	435,470	463,400	515,360	572,570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¹⁰⁾

개정안과 같이 기준연금액을 일시에 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여 지

10) 국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9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구체적인 국고보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음.

<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 >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 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참고)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약화될 우려에 대하여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우선 인상한 후 2027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기준연금액 40만원을 2026년부터 우선 적용할 ‘저소득 노인’의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준연금액을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되지만,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보유 소득·재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¹¹⁾(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6,454,924명)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총 5,699명(0.09%)임.

□ 그런데,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온 일반 노인과 그렇지 아니한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세수

11)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음.

- 이외에도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 소득이나 외국에 보유한 재산 등의 파악이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개별 복수국적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19세 이후 7년 이상 국내 거주)을 신설하여 일반 노인과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을 제고하고,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판단에 개별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아이슬란드(3년), 노르웨이(5년), 호주(10년) 등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국내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경우 그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거주 기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같이 국외의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그 수급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은 국내의 소득 및 재산과 달리 정확히 신고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를 파악하여 기초연금 지급 중단¹²⁾, 이미 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¹³⁾, 과태료 부과¹⁴⁾ 등의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하고,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12)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3)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14)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복수국적자 등과 국내 거주 국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국내 거주 기간 등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의 신고내용 및 방법·절차 등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